

물질안전보건자료



SYNERGY ISO 460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SYNERGY ISO 460
제품 코드 : 301275175008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 |
|----------------------|----|
| 알려진 사용방법 | |
| 산업용: Lubricating Oil | |
| 권장되지 않는 사용방법 | 사유 |
| 알려진 바 없음. | |

다. 제조자 : Calumet Branded Products, LLC
공급자 정보 : Calumet Branded Products, LLC
2780 Waterfront Pkwy E. Drive Suite 200
Indianapolis, IN 46214
USA
Technical Services:317-328-5660

수입자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통업자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긴급전화번호 (근무시간과 함께) : 24 hr. CHEMTREC 1-800-424-9300 / International 1-703-527-3887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분류되지 않음.
이 제품은 산업안전 및 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분류되지 않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급성 경피 독성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의 백분율: 1.5%
알려지지 않은 급성 흡입 독성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의 백분율: 5%
수생환경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의 퍼센트: 3.5%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신호어 : 없음.
유해·위험 문구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예방조치 문구
예방 : 해당 없음.
대응 : 해당 없음.
저장 : 해당 없음.
폐기 : 해당 없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알려진 바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조제품 : 혼합물
 다른 식별 수단 : 자료 없음.

| 성분명 | 관용명 | 식별자 | % |
|---|---|-----------------|-----------|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CAS: 64742-65-0 | ≥60 - <70 |
| Butene, homopolymer (products derived from either/or But-1-ene/But-2-ene) | POLYBUTENE | CAS: 9003-29-6 | ≥10 - <20 |
| 1-Propene, 2-methyl-, sulfurized | 1-Propene, 2-methyl-, sulfurized | CAS: 68511-50-2 | <10 |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내에서, 또한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물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 되어야 하는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장 노출한계의 자료가 있다면 8항에 기술되어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즉시 다량의 물로 가꿈 뒤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씻어낼 것.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자극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다량의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을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다.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화재시 분해제품을 흡입하면, 증상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감시가 필요함.
- 라. 먹었을 때** : 입을 물로 세척할 것.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물질을 삼켜서 노출된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 마시게 할 것. 의료요원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화재시 분해제품을 흡입하면, 증상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감시가 필요함.
- 특별 취급** :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 응급 처치자의 보호**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유해성 정보를 참조할 것. (11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주변 화재에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 부적절한 소화제** : 봉상주수(water jet)를 사용하지 말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 및 가열되면, 압력은 증가하며 용기는 폭발할 것 임.
-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분해산물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황 산화물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소방관은 적절한 보호 장비와 전면 정압 공기 공급형 호흡기가 있는 개인호흡기(SCBA)를 착용할 것.
- 소방관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항** : 화재가 날 경우 즉시 모든 사람을 사고 부근으로부터 퇴거시키고 현장을 격리할 것.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주변지역을 벗어날 것.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막을 것. 유출된 물질에 접촉하거나 밟지 말 것.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제품이 환경 오염(하수, 수로, 토양, 공기)을 발생시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할 것.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수용성인 경우 물로 희석시켜 닦아내시오. 비수용성인 경우, 비활성의 건조한 물질로 흡수시켜 적절한 폐기 용기에 담으시오.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 대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하수, 수로, 지하 또는 밀폐된 장소로 유입시키지 말 것. 유출물을 폐수처리공장으로 보내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할 것. 누출된 물질을 비인화성 흡착 물질, 예를 들면 모래, 흙, 질석, 규조토로 흡착하여 용기에 담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3항 참조).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주: 비상 연락 정보는 1항, 폐기물 처리는 13항을 참조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 방제 조치**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8항 참조).
- 일반적 산업 위생에 관한 조언** : 이 물질을 취급, 저장, 가공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는 것은 금지됨. 작업자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을 것. 음식물 섭취 장소로 들어가기 전 오염된 의복 및 보호 장비를 제거할 것. 위생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8항을 참조.
-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것.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며, 배합금지 물질 (10항을 참조) 과 음식 및 음료로부터 멀리 둘 것. 용기는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둘 것. 개봉한 용기는 주의 깊게 다시 봉한 다음 누출을 방지를 위해 세워 보관할 것. 라벨이 없는 용기에 보관하지 말 것. 적절한 봉쇄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 취급이나 사용 전에 섹션 10의 격리보관 물질을 확인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제어 변수**
노출기준

| 성분명 | 노출기준 |
|---|--|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ACGIH TLV (미국, 3/2019). TWA: 5 mg/m ³ 8 시간. 성상: 흡입 가능 크기 |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관리에 충분한 일반 배기장치를 사용할 것.
- 환경 노출 관리** : 배기 또는 작업 공정 설비로부터의 배출이 환경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배출물질을 허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흠 세정기(fume scrubbers), 필터, 또는 가공 시설에 대한 공학적 개조가 필요할 것임.

- 다. 개인 보호구**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 위해요소 및 노출 가능성을 근거로, 적절한 표준 또는 인증된 호흡기를 선택하십시오. 호흡기는 호흡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하여 적절한 착용, 교육, 및 사용상의 기타 중요한 측면이 보장되도록 한다.
- 눈 보호** : 위해성 평가 결과, 액체가 튀거나 미스트, 가스, 분진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필요가 있으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보호경을 착용할 것. 접촉이 가능한 경우, 다음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평가가 좀 더 강한 수준의 보호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측면 차폐형 안전 안경.
- 손 보호** : 위험 평가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화학 제품을 취급할 때, 승인 기준에 부합되는 내화학성, 불침투성 장갑을 언제나 사용할 것.
- 신체 보호** : 제품을 취급하기 전에 인체 개인 보호 장비는 실제 작업 성능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기초로 선택하고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위생상 주의사항** : 이 화학 제품을 취급한 다음 작업 종료 때,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손, 팔, 얼굴을 충분히 씻을 것. 의복에 잠재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눈 세척 장소와 안전 샤워 시설이 작업 장소와 가깝도록 확실히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 물리적 상태 : 액체.
- 색 : 자주.
- 나. 냄새** : 약함. 무취.
-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 라. pH** : 자료 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 없음.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자료 없음.
- 사. 인화점** : Open cup: 221°C (429.8°F) [Cleveland.]
- 발화점 : 자료 없음.
-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 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 없음.
- 카. 증기압** : 자료 없음.
- 타. 용해도** : 다음 물질에 불용성: 냉수 및 온수.
- 수용해도: : 자료 없음.
- 파. 증기밀도** : 자료 없음.
- 하. 비중** : 0.896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 없음.
- 더.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 러. 점도** : 동점도 (40°C (104°F)): 4.6 cm²/s (460 cSt)
- 흐름 시간(ISO 2431) : 자료 없음.
- 머. 분자량** : 해당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 제품은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일반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 다. 피해야 할 물질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정상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유해한 분해 산물이 발생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예상되는 유입 경로: 경구, 경피, 흡입.

잠재적 급성 건강 영향

- 흡입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먹었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눈에 들어갔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과다 노출 징후/증상

- 흡입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먹었을 때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눈에 들어갔을 때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 제품/성분명 | 결과 | 생물종 | 투여량 | 노출 |
|---|----------------|---------|--------------|------|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LC50 흡입 먼지와 연무 | 쥐 (rat) | >5.53 mg/l | 4 시간 |
| Butene, homopolymer (products derived from either/or But-1-ene/But-2-ene) | LD50 경피 | 토끼 | >2000 mg/kg | - |
| | LD50 경구 | 쥐 (rat) | >5000 mg/kg | - |
| | LD50 경피 | 토끼 | >10250 mg/kg | - |
| 1-Propene, 2-methyl-, sulfurized | LD50 경구 | 쥐 (rat) | >34600 mg/kg | - |
| | LD50 경구 | 쥐 (rat) | 8.6 g/kg | - |

자극성/부식성

자료 없음.

과민성

자료 없음.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 ISHA 제42조 작업 노출 한계

자료 없음.

변이원성

자료 없음.

발암성

자료 없음.

분류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제품/성분명 | OSHA | IARC | NTP | ACGIH |
|---|------|------|-----|-------|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 | - | - | A4 |

생식독성

자료 없음.

최기형성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 없음.

흡인 유해성

| 이름 | 결과 |
|---|------------|
| Butene, homopolymer (products derived from either/or But-1-ene/But-2-ene) | 흡인 유해성 - 1 |

만성 징후와 증상

만성 독성

자료 없음.

| | |
|---------|--------------------------|
| 일반 |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 발암성 |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 변이원성 |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 최기형성 |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 발생독성 |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 수정능력 영향 |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독성의 수치적 척도

급성 독성 추정치

| 제품/성분명 | 경구 (mg/kg) | 경피 (mg/kg) | 흡입 (가스) (ppm) | 흡입 (증기) (mg/l) | 흡입 (먼지 및 미스트) (mg/l) |
|---|------------|------------|---------------|----------------|----------------------|
| SYNERGY ISO 460 | N/A | 3869.9 | N/A | N/A | N/A |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N/A | 2500 | N/A | N/A | N/A |
| 1-Propene, 2-methyl-, sulfurized | 8600 | N/A | N/A | N/A | N/A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제품/성분명 | 결과 | 생물종 | 노출 |
|---|--|---------------------|----------------|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급성 EC50 >100 mg/l | 조류(藻類) | 72 시간 |
| | 급성 EC50 >100 mg/l 급성 LC50 >100 mg/l | 위험 반응성 물질 물고기 | 48 시간 96 시간 |
| 1-Propene, 2-methyl-, sulfurized | 만성 NOEL >1 mg/l 만성 NOEC 10 mg/l | 위험 반응성 물질 조류(藻類) | 21 일 - |
| | 만성 NOEC 1000 mg/l | 갑각류 | -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제품/성분명 | 수중 반감기 | 광분해 | 생물 분해성 |
|---|--------|-----|--------|
| Butene, homopolymer (products derived from either/or But-1-ene/But- 2-ene) | - | - | 쉬움 |

다. 생물 농축성

| 제품/성분명 | LogP _{ow} | BCF | 잠재적 |
|---|--------------------|------------|-----|
|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 2 - 6 | - | 높음 |
| Butene, homopolymer (products derived from either/or But-1-ene/But- 2-ene) | 7.6 - 7.8 | 314 - 1882 | 높음 |

라. 토양 이동성

토양/물 분배 계수(K_{oc})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가능한 폐기물 생성을 피하거나 최소로 할 것. 이 물질과 용액, 부산물은 언제나 그 지역의 환경보호법과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이나 쓰고 남은 제품은 허가된 폐기물 외주업자를 통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하수로 폐기되어서는 안됨. 사용된 포장용기는 재활용 되어야 함. 소각 또는 매립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제품 및 그 용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빈 용기 또는 라이너에 제품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UN | IMDG | IATA |
|-----------------|----------|----------|----------|
| 가. 유엔 번호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규제되지 않음. | - | 규제되지 않음. |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라. 용기등급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마. 환경 유해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추가 정보

UN : -
IMDG : -
IATA :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사용자의 구역 내에서의 운반:** 항상 밀폐 용기에 담아 똑바로 세워 안전하게 운반할 것.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출되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품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주지시킬 것.

MARPOL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운송 : 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 : 해당 없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다음 성분들은 작업노출기준이 있음: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 금속가공유: 광물성 오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지물질)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승인 대상(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 해당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물질)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사고대비 화학물질) : 모든 성분이 등재되지 않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Toluene, Methanol; Methyl alcohol,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9-11) branched alkyl esters, (C=10)-rich, Naphthalene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등급:** 제4류인화성 액체
품목: 6. 제4석유류
역치: 6000 L
위험등급: III
표시 주의사항: 화기엄금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재고 목록

호주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캐나다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중국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유럽 : 한 가지 성분도 EINECS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모든 성분이 ELINCS에 등재되어 있음 . 이 물질의 목록 등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연락하십시오.
일본 :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목록(ENCS):** 결정되지 않음.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목록(ISHL): 결정되지 않음.
뉴질랜드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필리핀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한국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대만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태국 : 결정되지 않음.
터키 : 결정되지 않음.
미국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베트남 : 결정되지 않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자료 없음.

나. 최초작/성일자 : 05/11/2020

다. 버전 : 1.01

라. 기타

이전 호와 변경된 정보를 나타냅니다.

약어 해설 : ATE = 급성독성 추정치
BCF = 생물 농축 계수
GH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IATA =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BC = 중형산적 용기
IMDG =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LogPow = 물/옥탄올 분배계수의 로그값
MARPOL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 ("Marpol" = 해양오염물질)
N/A = 자료 없음
SGG = 분리 그룹
UN = 국제 연합

주의

16. 그 밖의 참고사항

여기에 기술된 정보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 담긴 정보에 대한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대해 위에 언급된 공급자나 그 자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의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모든 물질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취급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술된 위험성 이외에 다른 위험들이 잠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